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및 발의일자 : 김성조의원 외 17인(2024. 06. 03)

나. 회부일자 : 2024년 06월 04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4. 06. 26)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성조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할인된 요금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노인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지원체계 구축,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손실금 지원,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사후관리,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명권)

❍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노인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체계 구축,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손실금 지원,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후관리,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검토 결과,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약자 등의 이동권 증진으로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 목적 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현재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철도, 공영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관련 조례나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있는 상황임.

❍ 또한, 가장 많은 대상자인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철도나 도시철도는 있어도 시내버스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다만,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나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자 인구 비중과 연간 이용실적이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후 무료승차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국도비 확보와 지원 연령의 조정, 특정 시간대 탑승 시 요금감면 등 다각적 방면으로 효율적인 추진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노인 무료승차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6. 토론의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